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며,
각 기관 상황에 맞게 변경, 갱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 장기요양기관(입소, 재가)용 -

2020. 2. 20.

■ 목 차 ■

제1장. 수립배경

1. 목적	1
2. 기본방향	1
○ (참고 1) 코로나 19(COVID-19) 대응원칙	3
○ (참고 2) 코로나 19(COVID-19) 사례정의	4

제2장. 세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상황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5
상황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	12
- 노인요양시설 방문자가 의사환자인 경우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의사환자인 경우	
상황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16
상황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24
상황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	29
- 의사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 종사자가 의사환자인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한 경우	
상황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32
< 별첨 > 용어 정리	36
< 부록 1~7 >	42

제1장. 수립 배경

1. 목 적

- 최근 코로나 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함으로써 감염증 전파를 방지하고 종사자 및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함

* 정부에서는 고객응대 서비스 사업장인 경우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점검 및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를 내림('20.1.29., 고용노동부)

< 발생가능 케이스(6종) >

- Case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 Case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 Case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 Case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 Case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 Case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2. 기본 방향

- 대표자(시설장)는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하였거나, 방문 예정인 직원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체교육 및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함
- 국내 확진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6개국 국가(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홍콩, 마카오)에 한하여 종사자 업무배제 시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 해외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 배제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연간 30일 이내 병가 사용)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
-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736(2020.2.18.)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보호조치 강화 안내'

- 대표자(시설장)는 장기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감염증 의심 등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 및 수급자의 동향파악에 철저를 기함
- 대표자(시설장)는 장기요양기관 내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방문인 포함) 발견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에 신고
 - ※ 지자체(보건소) 및 건보공단 상황보고, 보건소 신고의무 이행 철저
- 종사자 및 수급자 가운데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에 첨부된 세부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히 조치함
 - ※ 장기요양기관 폐쇄 또는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 안내 등 세부 상황별 조치
 - ※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와 밀접하게 접촉한 종사자·수급자가 있는 경우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및 이동 금지
- 대표자(시설장)는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이나 공급 차질에 대비해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
 - * 마스크(N95, KF94에 준함), 비누, 손세정제, 체온계 등
- 대표자(시설장)는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종사자 및 수급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유입 및 확산 예방 노력
- 대표자(시설장)는 유행 확산에 대비해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 인력, 대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 현황을 파악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장기요양 종사자 결근에 대비하여 지자체 및 보건소에 협조·지원 요청할 것을 권고
- 지자체 및 보건소, 공단 등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참고1 코로나 19 (COVID-19) 대응원칙

-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 19(COVID-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 코로나 19(COVID-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

※ 코로나 19(COVID-19) 관련 정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사항, '20.2.12.)
○ (병원체) 2019 novel Coronavirus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 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 (전염력) $R_0^* = 1.4 \sim 2.5$ (SARS의 경우 3,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 전파 4) ○ (잠복기) 1~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폐렴 ○ (위중도) 중국 폐렴 보고사례 중 25%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치명률) 중국 약 2.1%** * 중국 전체 2.1%, 후베이성 내 3.1%, 우한시 내 4.9%, 후베이성 외 지역(성) 0.16%†
* Statement on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2019-nCoV)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ttps://www.who.int/news-room/detail/23-01-2020-statement-on-the-meeting-of-the-international-health-regulations-(2005)-emergency-committee-regarding-the-outbreak-of-novel-coronavirus-(2019-ncov)?from=singlemessage&isappinstalled=0 (2020), †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발표자료(2020.2.4.)

참고2 코로나 19 (COVID-19) 사례정의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 확진 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 19(COVID-19)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COVID-19)이 의심되는 자
※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 불명의 폐렴 등

○ 접촉자(WHO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 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 19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 19 환자의 동거인

※ 발열 : 37.5 ℃ 이상

< 신고 대상 >

- | | | |
|--|---|--|
| 1. 최근 14일 이내에 <u>중국</u> 방문 | + | <u>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u> |
| 2. 최근 14일 이내에 <u>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u> | + | |
| 3. <u>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COVID-19)이 의심되는 자</u>
코로나 19(COVID-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 |

제2장. 세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상황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 대응 개요 >

<증상발생 전>

확진환자의
접촉자

(보건소) 자가격리

→
증상
발생

<증상발생 후>

의사환자로 분류, 자가격리
(중증일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 접촉자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관할 역학조사반이 시행

[사례] 노인요양시설의 방문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 ▶ 접촉자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김△△, 수급자 이△△
- ▶ 접촉일시 : 2020. 2. 3. 15:30, ○○노인요양시설 건강실 401호
 - ※ 방문자 ○○○은 2020. 2. 4. 09시경 확진환자로 판정(관할 보건소)
- ▶ 노출기간 : 2020. 2. 3. ~ 2. 4. (2일간)
- ▶ 시설규모(자체 건물) … 지상 4층
 - 1층(사무실, 원장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2층(요양보호사실, 건강실 201~210), 3층(요양보호사실, 건강실 301~310), 4층(요양보호사실, 건강실 401~410) 등

1. 단계별 대응절차

< 주요 사항 >

- ◆ 대표자(시설장)는 전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접촉자 발생 사실을 알린다.
- ◆ 대표자(시설장)는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른다.
- ◆ 대표자(시설장)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폐쇄(전체 또는 부분)한다.
 - ※ 폐쇄 후 소독 : ① (지자체장) 최초 방역소독 → ② (대표자(시설장)) 2~3회 자체소독 → ③ 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환기
- ◆ 대표자(시설장)는 노인요양시설이 폐쇄된 경우 격리기간(1~14일) 동안 해당 기관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다른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2. 접촉당사자 조치

< 접촉자 조사의 개요 >

- ◆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즉각대응팀 등)가 결정한다.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
 -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 정도를 평가(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 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한다.
-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 19(COVID-19) 환자의 동거인

- 질병관리본부는 노인요양시설에 확진환자가 다녀갔음을 알리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관할 역학조사관, 즉각대응팀)을 출동시킨다.
- 대표자(시설장)는 출동한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접촉자로 결정한 요양보호사 김△△, 수급자 이△△를 즉시 자가 격리 조치한다.
 -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붙임 2)
 - 자가 격리의 방법·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요양보호사 김△△과 수급자 이△△는 격리기간 중 거주지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점검에 반드시 응한다.
 -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보건소는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김△△과 수급자 이△△가 격리기간 중에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요양보호사 김△△과 수급자 이△△의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

격리해제 : 코로나19(COVID-19) 검사 '음성' 판정

-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
 -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
 -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3. 종사자 및 수급자 조치

㉠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확진환자가 방문하여 접촉자가 발생한 사실을 전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 ▶ 대표자(시설장) → 보건소, 관할 운영센터(휴일시 당직실 033-736-4114)로 보고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
 - 즉시 유선보고 ☎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붙임7)
- ▶ 보호자에게 SMS, 유선전화 등 면회·외출 제한 안내

- 대표자(시설장)는 접촉한 직원과 수급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보건소 조치 이행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및 수급자 >

- 종사자 및 수급자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설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 요양보호사 김△△, 수급자 이△△과 같은 층(공간)에서 생활했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위생관리 및 증상발현 유무를 수시로 관찰한다.

- 요양보호사 김△△과 수급자 이△△는 독립된 공간에서 대기한다.

※ 김△△, 이△△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사팀의 지시에 따름

- 종사자 및 수급자는 조사팀이 실시하는 증상확인, 검체 채취에 적극 협조한다.

< 방역소독 >

< 방역소독 정의 및 관련법령 >

- ◆ (정의)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 유행 예방을 위한 감염원, 경로, 개체의 감수성에 대한 갖가지 처치
- ◆ (관련법령) 감염자 발생 이후 방역대책은 보건소 주관으로 발생보고, 병리검사, 격리, 검역, 소독, 면역(예방접종), 감염원 조사로 진행
 - 「감염병예방법」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라 기관 대표자는 감염병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에 따라 지자체장(보건소 방역팀)은 소독 조치를 시행

- 대표자(시설장)는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실시 방법·시기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소독은 3회에 걸쳐서 하고, 최종 소독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 최초 소독은 관할 보건소(방역팀)에서 실시, 2·3회는 대표자(시설장)가 외부업체 의뢰 또는 자체소독 실시

- 대표자(시설장)는 방역이 종료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노인요양 시설의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한다.

- (소독제)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70~90%) 등 환경소독제

- (소독대상)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침실, 복도, 침대난간 등

- (주의사항) 접촉한 종사자와 수급자의 물컵, 수건 등 만지지 않기

- (환기) 최소 6회, 1일 최소 2시간 이상

4. 장기요양기관 조치

< 노인요양시설 폐쇄는 보건소 지시에 따름 >

① (부분폐쇄) 확진환자가 다녀간 4층(요양보호사실, 건강실 401~410호)만 폐쇄하는 경우

- 대표자(시설장)는 즉시 4층을 봉인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며, 노인요양시설 입구에 부분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다른 층에 임시침실 등을 설치하여 수급자 서비스를 수행한다.

※ 노인요양시설 1층 입구에 부분폐쇄 안내문 부착(붙임 4)

- 대표자(시설장)은 자가 격리된 종사자 및 수급자 규모에 따라 전원 대책을 마련한다. ... 생활수칙 안내문 부착(붙임 1)

② (전체폐쇄) 확진환자의 동선이 넓어 전체를 폐쇄하는 경우

- 대표자(시설장)는 즉시 노인요양시설을 봉인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며, 노인요양시설 입구에 일시적 폐쇄 안내문을 부착한다.

※ 노인요양시설 1층 입구에 폐쇄 안내문 부착(붙임 5)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에 대한 격리조치, 이송방법 · 장소 · 기관 관련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또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 권고에 따른다.

- 전 종사자는 자가 격리하며, 보건복지부 대응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08(2020.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 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시달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전원은 지자체장(보건소장) 지시에 따름 >

㉠ 수급자 전원조치에 관한 기본 원칙

- ◆ 수급자에 대한 전원 조치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조치·권고에 따라 진행한다.
- ◆ 노인요양시설 폐쇄에 따른 전원 결정사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 수급자(보호자)의 의사결정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유형별 세부 방안에 따라 전원을 추진한다.
 - (자택 귀가) 보호자가 수급자를 직접 돌볼 수 있을 경우
 - (관내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병원 등 이송) 수급자(보호자)가 자가격리 환경조성이 어려운 경우
 - (시설 내 자체 격리) 시설에서 자체 격리가 필요한 경우

㉡ 유형별 전원조치 방안

○ 자택으로 귀가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 보호자 수발이 가능하고, 수급자(보호자)가 동의하면 자택으로 귀가 조치를 실시한다.
- 이송수단은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전용구급차를 지원받는다.
- 수급자 자택 관할 보건소에서는 수급자에 대해 격리 기간 중 매일 상태점검을 실시한다.
- 보건소는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 수급자에 대한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

격리해제 : 코로나19(COVID-19) 검사 '음성' 판정

-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
 -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
 -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 관내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송기관으로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진환자 이송에 적극 협조한다.
- 이송수단은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전용구급차를 지원 받는다.

○ 시설 내 자체 격리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보건소의 역학조사결과 의심 증상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체 격리를 실시한다.
- 자가 격리 및 전원 조치로 인한 공실을 활용하여 전체 1인실로 사용한다.
- 보건소로부터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지원받아 지정된 요양보호사가 수발 및 매일 상태점검을 실시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입소유지 또는 전원 조치하며, 확진환자로 판정되면 즉시 보건소로부터 전용구급차를 지원받아 음압병상으로 이송한다.

5. 폐쇄기간 및 업무가동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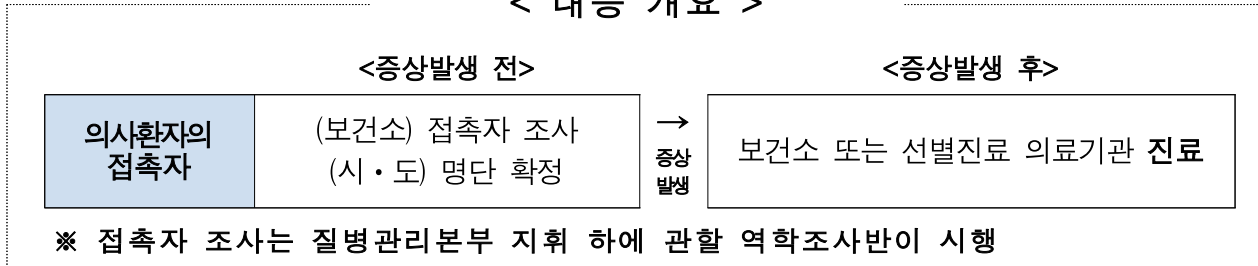
- 대표자(시설장)는 폐쇄된 노인요양시설 개방 시기를 보건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권고에 따라 전원된 수급자를 재입소 조치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노인요양시설 개방 시 업무개시 안내문을 부착한다.

◆ 환자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지시와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1339문의,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 사례 분류, 격리, 노인요양시설 폐쇄 등 조치사항을 문의하여 지시에 따를 것

상황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 대응 개요 >



[사례 1] 노인요양시설 방문자가 의사환자인 경우

- 접촉자 : ○○노인요양시설 사무국장 박△△, 수급자 김△△
- 접촉일시 : 2020. 2. 5. 16:00 ... ○○노인요양시설 1층 사무실, 요양실 109호
 ※ 시설 방문자(의사환자)의 가족이 2. 6. 10:20, 확진환자로 판정
- 시설규모(자체 건물) ... 지상 2층
 - 1층(사무실, 원장실, 요양실 101~120호), 2층(프로그램실, 식당, 간호사실)

[사례 2]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의사환자인 경우

- 접촉자 : ○○노인요양시설 1층 종사자 및 수급자
- 접촉일시 : 2020. 2. 10. 16:00 ... ○○노인요양시설 1층 요양실
 ※ 요양보호사 홍◇◇는 2. 11. 호흡기 증상 발생으로 의사환자로 판정
- 시설규모(자체 건물) ... 지상 2층
 - 1층(사무실, 원장실, 요양실 101~120호), 2층(프로그램실, 식당, 간호사실)

1. 단계별 대응절차

< 주요사항 >

- ◆ 대표자(시설장)는 전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의사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린다.
- ◆ 대표자(시설장)는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른다.
- ◆ 대표자(시설장)는 노인요양시설 내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2. 접촉당사자 조치

< 접촉자 조사의 개요 >

- ◆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즉각대응팀 등)가 결정한다.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
 -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정도를 평가(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한다.
-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 19(COVID-19) 환자의 동거인

- 질병관리본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의사환자와 접촉했음을 알리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관할 역학조사관)을 출동시킨다.
- 대표자(시설장)는 출동한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접촉자로 결정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해 사례별로 조치한다.
 - (증상이 없는 경우) 종사자는 정상 근무, 수급자는 정상 생활한다.
 - ※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 (증상이 있는 경우) 종사자 및 수급자는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다.
 - 판정 전까지는 자가 격리한다.
 -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검사결과에 따라 보건소 지시를 받는다.

3. 종사자 및 수급자 조치

㉠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했음을 전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 ▶ 대표자(시설장) → 보건소, 관할 운영센터(휴일시 당직실 033-736-4114)로 보고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
 - 긴급한 경우 즉시 유선보고 ☎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붙임7)
- ▶ 보호자에게 SMS, 유선전화 등 면회·외출 제한 안내

- 대표자(시설장)는 접촉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보건소 조치 이행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및 수급자 >

- 종사자 및 수급자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설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의사환자와 접촉 또는 같은 층(공간)에서 생활했던 수급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위생관리 및 증상 발현 유무를 수시로 관찰한다.
 - 의사환자와 접촉한 수급자 및 종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대기한다.
 - ※ 박△△, 홍◇◇◇, 김△△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조사팀의 지시에 따름
- 종사자 및 수급자는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른다.

< 방역소독 >

< 방역소독 정의 및 관련법령 >

- ◆ (정의)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 유행 예방을 위한 감염원, 경로, 개체의 감수성에 대한 갖가지 처치
- ◆ (관련법령) 감염자 발생 이후 방역대책은 보건소 주관으로 발생보고, 병리 검사, 격리, 검역, 소독, 면역(예방접종), 감염원 조사로 진행
 - 「감염병예방법」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라 기관 대표자는 감염병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에 따라 지자체장(보건소 방역팀)은 소독 조치를 시행

○ 대표자(시설장)는 자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한다.

- (소독제)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70~90%) 등 환경소독제
- (소독대상)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침실, 복도, 침대난간 등
- (주의사항) 접촉한 종사자와 수급자의 물컵, 수건 등 만지지 않기
- (환기) 최소 6회, 1일 최소 2시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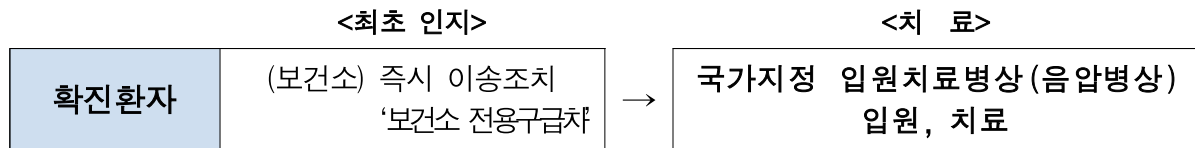
◆ 환자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지시와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1339문의,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 사례분류, 격리, 노인요양시설 폐쇄 등 조치사항을 문의하여 지시에 따를 것

상황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 대 응 개 요 >

◆ 확진 환자 관리



◆ 확진 환자의 접촉자 관리



※ 접촉자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관할 역학조사반이 시행

[사례 1]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 확진환자 : 요양보호사 김○○
- 발생일시 : 2020. 2. 4. 9:00 ... 보건소 통보일시
- 발병원인 : 2020. 2. 3. 15:30 확진환자인 지인과 저녁식사
- 노출기간 : 2020. 2. 3. ~ 2. 4. (2일간)
 - ※ 요양보호사 김○○은 2층에 입소한 수급자 다수에게 서비스 제공
- 시설규모(자체 건물) ... 지상 3층
 - 1층(사무실, 원장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2층(요양보호사실, 건강실 201~210), 3층(요양보호사실, 건강실 301~310)

[사례 2] 수급자가 입소 후 확진환자가 된 경우

- 확진환자 : 수급자 이△△
- 발생일시 : 2020. 2. 13. 15:00 ... 보건소 통보일시
- 발병원인 : 2020. 2. 11. 18:30 확진환자와 접촉한 아들과 식사
- 노출기간 : 2020. 2. 11. ~ 2. 13. (3일간)
 - ※ 수급자 이△△은 2층에 입소 후 종사자 다수와 접촉
- 시설규모(자체 건물) ... 지상 3층
 - 1층(사무실, 원장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2층(요양보호사실, 건강실 201~210), 3층(요양보호사실, 건강실 301~310)

1. 단계별 대응절차

< 주요 사항 >

- ◆ 대표자(시설장)는 전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진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린다.
- ◆ 대표자(시설장)는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른다**.
- ◆ 대표자(시설장)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폐쇄(전체 또는 부분)**한다.
 - ※ 폐쇄 후 소독 : ① (지자체장) 최초 방역소독 → ② (대표자(시설장)) 2~3회 자체소독 → ③ 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환기
- ◆ 대표자(시설장)는 장기요양기관이 폐쇄된 경우 **격리기간(1~14일)** 동안 해당 기관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및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2. 접촉당사자 조치

< 접촉자 조사의 개요 >

- ◆ **확진자 심층역학조사**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한다.
 -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재확인한다.
 -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 ◆ **접촉자 조사**
 -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즉각대응팀 등)가 결정한다.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
 -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 정도를 평가(확진 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 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한다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다.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리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 19(COVID-19) 환자의 동거인

- 질병관리본부는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김○○, 수급자 이△△가 확진환자임을 알리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관할 역학조사관, 즉각대응팀)을 출동시킨다.

㉠ 확진환자(요양보호사 김○○, 수급자 이△△) 조치

- 확진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전용 구급차를 지원받아 음압병상으로 이동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진환자 이송에 적극 협조한다.

< 이송조치 >

- ◆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
 - * 운전석과 의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
 - 의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
 - 구급차 운전자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

㉡ 접촉자(종사자 및 수급자 등)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출동한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접촉자로 결정한 2층 종사자 및 수급자를 즉시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한다.
 -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붙임 2)
 - 자가 격리의 방법·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종사자 및 수급자는 격리기간 중 거주지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점검에 반드시 응한다.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보건소는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종사자 및 수급자가 격리 기간 중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종사자 및 수급자의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

격리해제 : 코로나19(COVID-19) 검사 '음성' 판정

-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
 -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
 -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3. 종사자 및 수급자 조치

㉠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김○○, 수급자 이△△가 확진환자로 통보받은 사실을 전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 ▶ 대표자(시설장) → 보건소, 관할 운영센터(휴일시 당직실 033-736-4114)로 보고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
 - 즉시 유선보고 ☎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붙임7)
- ▶ 보호자에게 SMS, 유선전화 등 면회·외출 제한 안내

㉡ 보건소 조치 이행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및 수급자 >

- 종사자 및 수급자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설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확진환자인 요양보호사 김○○, 수급자 이△△과 같은 층(공간)에 있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위생관리 및 증상발현 유무를 수시로 관찰한다.
 - 확진환자 요양보호사 김○○, 수급자 이△△은 자가 격리(독립된 공간) 상태에서 대기한다.
 - ※ 격리된 수급자 및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조사팀의 지시에 따름
- 종사자 및 수급자는 조사팀이 실시하는 증상확인, 검체 채취에 적극 협조한다.

< 방역소독 >

< 방역소독 정의 및 관련법령 >

- ◆ (정의)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 유행 예방을 위한 감염원, 경로, 개체의 감수성에 대한 갖가지 처치
- ◆ (관련법령) 감염자 발생 이후 방역대책은 보건소 주관으로 발생보고, 병리 검사, 격리, 검역, 소독, 면역(예방접종), 감염원 조사로 진행
 - 「감염병예방법」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라 기관 대표자는 감염병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에 따라 지자체장(보건소 방역팀)은 소독 조치를 시행

- 대표자(시설장)는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실시 방법·시기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소독은 3회에 걸쳐서 하고, 최종 소독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 ※ 최초 소독은 관할 보건소(방역팀)에서 실시, 2·3회는 대표자(시설장)가 외부업체 의뢰 또는 자체소독 실시
- 대표자(시설장)는 방역이 종료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노인요양 시설의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한다.
 - (소독제)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70~90%) 등 환경소독제
 - (소독대상)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침실, 복도, 침대난간 등
 - (주의사항) 확진 종사자의 물컵, 수건 등 만지지 않기
 - (환기) 최소 6회, 1일 최소 2시간 이상

4. 장기요양기관 조치

< 노인요양시설 폐쇄는 보건소 지시에 따름 >

① (부분폐쇄) 확진환자가 다녀간 2층(요양보호사실, 건강실 201~210호)만 폐쇄하는 경우

- 대표자(시설장)는 즉시 2층을 봉인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며, 노인요양시설 입구에 부분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다른 층에 임시침실 등을 설치하여 수급자 서비스를 수행한다.

※ 노인요양시설 1층 입구에 부분폐쇄 안내문 부착(붙임 4)

- 대표자(시설장)은 자가 격리된 종사자 및 수급자 규모에 따라 전원 대책을 마련한다. ... 생활수칙 안내문 부착(붙임 1)

② (전체폐쇄) 확진환자의 동선이 넓어 전체를 폐쇄하는 경우

- 대표자(시설장)는 즉시 노인요양시설을 봉인하고 차단봉을 설치하며, 노인요양시설 입구에 일시적 폐쇄 안내문을 부착한다.

※ 노인요양시설 1층 입구에 폐쇄 안내문 부착(붙임 5)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에 대한 격리조치, 이송방법 · 장소 · 기관 관련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또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 권고에 따른다.

- 전 종사자는 자가 격리하며, 보건복지부 대응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08(2020.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 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시달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전원은 자자체장(보건소장) 지시에 따름 >

㉠ 수급자 전원조치에 관한 기본 원칙

- ◆ 수급자에 대한 전원 조치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자자체장(보건소장)의 조치·권고에 따라 진행한다.
- ◆ 노인요양시설 폐쇄에 따른 전원 결정사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 수급자(보호자)의 의사결정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유형별 세부 방안에 따라 전원을 추진한다.
 - (자택 귀가) 보호자가 수급자를 직접 돌볼 수 있을 경우
 - (관내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병원 등 이송) 수급자(보호자)가 자가격리 환경조성이 어려운 경우
 - (시설 내 자체 격리) 시설에서 자체 격리가 필요한 경우

㉡ 유형별 전원조치 방안

○ 자택으로 귀가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코로나19 검가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수급자 중 보호자 수발이 가능하고, 수급자(보호자)가 동의하면 자택으로 귀가조치를 실시한다.
- 이송수단은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전용구급차를 지원받는다.
- 수급자 자택 관할 보건소에서는 수급자에 대해 격리 기간 중 매일 상태점검을 실시한다.
- 보건소는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 수급자에 대한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

격리해제 : 코로나19(COVID-19) 검사 '음성' 판정

-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
 -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
 -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 관내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송기관으로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진환자 이송에 적극 협조한다.
- 이송수단은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전용구급차를 지원 받는다.

○ 시설 내 자체 격리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보건소의 역학조사결과 의심 증상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체 격리를 실시한다.
- 자가 격리 및 전원 조치로 인한 공실을 활용하여 전체 1인실로 사용한다.
- 보건소로부터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지원받아 지정된 요양보호사가 수발 및 매일 상태점검을 실시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입소유지 또는 전원 조치하며, 확진환자로 판정되면 즉시 보건소로부터 전용구급차를 지원받아 음압병상으로 이송한다.

5. 폐쇄기간 및 업무가동 시기

- 대표자(시설장)는 폐쇄된 노인요양시설 개방 시기를 보건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권고에 따라 전원된 수급자를 재입소 조치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노인요양시설 개방 시 업무개시 안내문을 부착한다.

◆ 환자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지시와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1339문의,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 사례 분류, 격리, 노인요양시설 폐쇄 등 조치사항을 문의하여 지시에 따를 것

상황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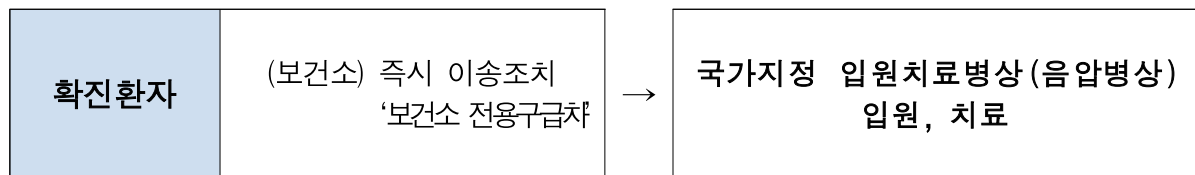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 대 응 개 요 >

◆ 확진 환자 관리

<최초 인지>

<치 료>



◆ 확진 환자의 접촉자 관리

<증상발생 전>

<증상발생 후>



※ 접촉자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관할 역학조사반이 시행

[사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 확진환자 :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김○○
- 발생일시 : 2020. 2. 15. 11:00 ... 보건소 통보일시
- 발병원인 : 2020. 2. 11. 12:00 확진환자인 지인과 식사
- 노출기간 : 2020. 2. 11. ~ 2. 15.(5일간)

※ 요양보호사 김○○은 수급자 김△△(3등급, 독거)에게 방문요양(180분) 제공

1. 단계별 대응절차

< 주요 사항 >

-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알린다.
-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 대표자(시설장)는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조사에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르도록 안내한다.
- ◆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자가격리 하도록 한다.
-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업무 배제 조치를 하고, 수급자에 대한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 한다.

2. 접촉당사자 조치

< 접촉자 조사의 개요 >

- ◆ 확진자 심층역학조사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한다.
 -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재확인한다.
 -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 ◆ 접촉자 조사
 -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즉각대응팀 등)가 결정한다.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
 -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 정도를 평가(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 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한다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다.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 19(COVID-19) 환자의 동거인

㉠ 확진환자(요양보호사 김○○) 조치

- 확진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전용 구급차를 지원받아 음압병상으로 이동한다.

< 이송조치 >

- ◆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
 - * 운전석과 의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
 - 의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
 - 구급차 운전자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

㉡ 접촉자(수급자 김△△)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 김○○이 확진 환자임을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접촉자로 결정한 수급자 김△△을 즉시 자가 격리 하도록 안내한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붙임 2)

- 자가 격리의 방법 · 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수급자 김△△은 자가 격리 기간 중 거주지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점검에 반드시 응한다.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보건소는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 김△△이 자가 격리 기간 중에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수급자 김△△의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

격리해제 : 코로나19(COVID-19) 검사 ‘음성’ 판정

-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
 -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
 -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3. 종사자 및 수급자 조치

㉠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 김○○이 확진 환자인 사실을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르도록 안내한다.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 ▶ 수급자 자택 방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시설장) → 보건소, 관할 운영센터(휴일시 당직실 033-736-4114)로 보고 → 수급자 및 보호자 안내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
(즉시 유선보고) ☎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붙임7)

- 대표자(시설장)는 접촉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해 다른 요양보호사를 대체 투입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대응요령에 대한 안전교육과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한다.

㉡ 종사자에 대한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김○○이 확진환자로 격리된 경우 업무배제 처리한다.

3 보건소 조치 이행

- 수급자 김△△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가정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게 한다.
- 수급자 김△△는 조사팀이 실시하는 증상확인, 검체 채취에 적극 협조한다.
- 자가 격리의 방법·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방역소독 >

< 방역소독 정의 및 관련법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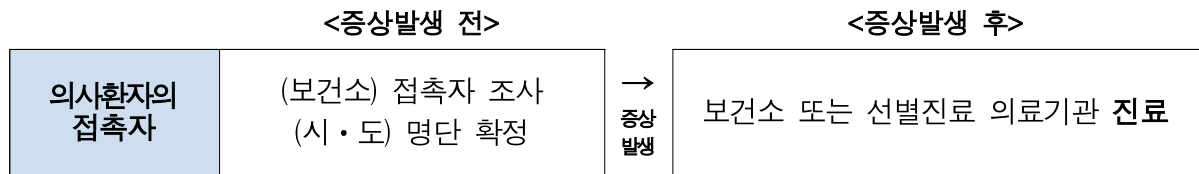
- ◆ (정의)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 유행 예방을 위한 감염원, 경로, 개체의 감수성에 대한 갖가지 처치
- ◆ (관련법령) 감염자 발생 이후 방역대책은 보건소 주관으로 발생보고, 병리 검사, 격리, 검역, 소독, 면역(예방접종), 감염원 조사로 진행
 - 「감염병예방법」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라 기관 대표자는 감염병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에 따라 지자체장(보건소 방역팀)은 소독 조치를 시행

- 대표자(시설장)는 보건소와 협의하여 수급자 가정에 방역소독 실시하도록 진행한다.
 - 소독은 3회에 걸쳐서 하고, 최종 소독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상황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 대응 개요 >



※ 접촉자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관할 역학조사반이 시행

[사례 1] 의사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 ▶ 접촉자 : ○○재가센터 수급자 권△△(독거노인)
- ▶ 접촉일시 : 2020. 2. 1. ~ 2. 2. ... 요양보호사 최△△가 방문요양서비스(12:00~16:00)
- ※ 요양보호사 최△△은 2020. 2. 3. 호흡기 증상 발생 등으로 의사환자로 판정

[사례 2] 종사자가 의사환자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 접촉자 :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박○○
- ※ 수급자 김△△는 중국 거주하는 자녀 방문(2. 3. ~ 2. 5.) 후 의사환자로 판정(2.10.)
- ▶ 접촉일시/장소 : 2020. 2. 5. ~ 2. 9. ... 수급자 김△△에게 방문요양서비스(09:00~12:00)

1. 단계별 대응절차

< 주요사항 >

-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 대표자(시설장)는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조사에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르도록 안내한다.
- ◆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자가격리 하도록 한다.
-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업무 배제 조치를 하고, 수급자에 대한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 한다.

2. 접촉당사자 조치

< 접촉자 조사의 개요 >

- ◆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즉각대응팀 등)가 결정한다.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
 -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정도를 평가(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 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한다.
-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 19(COVID-19) 환자의 동거인

-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환자인 종사자 및 수급자와 접촉했음을 알리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관할 역학조사관)을 출동시킨다.
- 대표자(시설장)는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접촉자로 결정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해 사례별로 조치한다.
 - (증상이 없는 경우) 종사자는 정상 근무하며, 수급자에게는 다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다.
 -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위생관리 실천 방법 및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하도록 교육
 - (증상이 있는 경우) 종사자 및 수급자는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다.
 - 판정 전까지는 자가 격리한다.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검사결과에 따라 보건소 지시를 받는다.

3. 종사자 및 수급자 조치

㉠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전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 ▶ 수급자 자택 방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시설장) → 보건소, 관할 운영센터(휴일시 당직실 033-736-4114)로 보고 → 수급자 및 보호자 안내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
(즉시 유선보고) ☞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붙임7)

- 대표자(시설장)는 접촉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해 다른 요양보호사를 투입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대응요령에 대한 안전교육과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한다.

㉡ 종사자에 대한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종사자가 의사환자로 격리된 경우 업무배제 처리한다.

㉢ 보건소 조치 이행

- 종사자 및 수급자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가정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 종사자 및 수급자는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른다.

◆ 환자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지시와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1339문의,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 사례 분류, 격리 등 조치사항을 문의하여 지시에 따를 것

상황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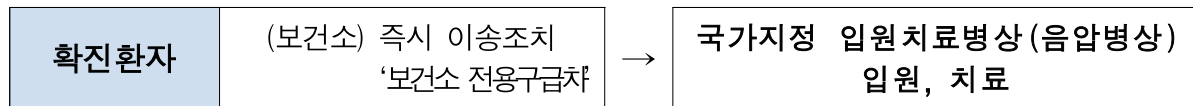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 대 응 개 요 >

◆ 확진 환자 관리

<최초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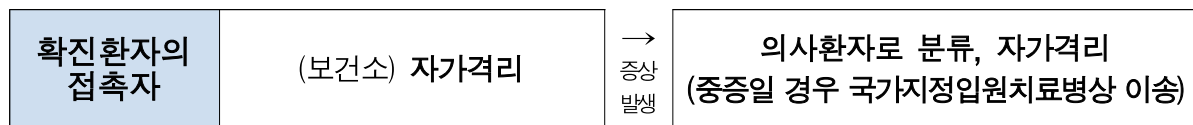
<치 료>



◆ 확진 환자의 접촉자 관리

<증상발생 전>

<증상발생 후>



※ 접촉자 조사는 질병관리본부 지휘 하에 관할 역학조사반이 시행

[사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확진환자 : 수급자 안△△

▸ 발생일시 : 2020. 2. 10. 11:30 ... 보건소 통보 일시

▸ 발병원인 : 2020. 1. 28. 중국 거주 자녀가 명절을 맞아 방문

▸ 노출기간 : 2020. 2. 1. ~ 2. 9.(9일간)

※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민○○가 2020. 2. 1. ~ 2. 9.까지 방문요양(180분) 제공

1. 단계별 대응절차

< 주요 사항 >

-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 한다.
- ◆ 대표자(시설장)는 즉시 종사자에게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린다.
- ◆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자가 격리 하도록 한다.
-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업무 배제 조치를 하고,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접촉당사자 조치

< 접촉자 조사의 개요 >

◆ 확진자 심층역학조사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한다.
-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재확인한다.
 -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 접촉자 조사

-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즉각대응팀 등)가 결정한다.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
 -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 정도를 평가(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 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한다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다.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 19(COVID-19) 환자의 동거인

-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보호사 민○○이 확진환자와 접촉했음을 알리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관할 역학조사관)을 출동시킨다.

㉠ 확진환자(수급자 안△△) 조치

- 확진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전용 구급차를 지원받아 음압병상으로 이동한다.

< 이송조치>

◆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

- * 운전석과 의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
- 의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
- 구급차 운전자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

2. 접촉자(요양보호사 민○○)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민○○에게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확진환자로 결정한 수급자 안△△과 접촉한 사실을 알리고, 즉시 자가 격리 하도록 조치한다.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 발부(붙임 2)
- 자가 격리의 방법·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요양보호사 민○○은 격리기간 중 거주지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점검에 반드시 응한다.
- 보건소는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민○○이 격리 기간 중에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요양보호사 민○○의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

격리해제 : 코로나19(COVID-19) 검사 ‘음성’ 판정

-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
-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
-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3. 종사자 조치

㉠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 서비스 중 확진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전 종사자에게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 ▶ 대표자(시설장) → 보건소, 관할 운영센터(휴일시 당직실 033-736-4114)로 보고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
 - 즉시 유선보고 ☞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붙임7)

- 대표자(시설장)는 접촉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해 다른 요양보호사를 대체 투입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대응요령에 대한 안전교육과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한다.

㉡ 종사자에 대한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민○○이 의사환자로 격리된 경우 업무배제 처리한다.

㉢ 보건소 조치 이행

- 요양보호사 민○○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가정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게 한다.
- 요양보호사 민○○는 조사팀이 실시하는 증상확인, 검체 채취에 적극 협조한다.
- 자가 격리의 방법·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1. 자가격리

- 격리장소 바깥 외출을 금지하는 상태에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매일 자가모니터링*하고 접촉한일로부터 14일 동안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증상 확인

* 자가모니터링: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유선 연락할 때 본인의 증상을 알려주는 것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2. 접촉자

-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 오염된 환경과 접촉하여 감염을 받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나 동물
- 접촉자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구분 하였으나, 현재는 접촉자로 일원화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 19(COVID-19)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 19(COVID-19) 환자의 동거인

3. 자가격리 해제

-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보건소는 격리해제 일정 확인
 - (의사환자) 시·도에서 격리해제를 최종 결정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전달
 - (확진환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를 최종 결정하고 시·도에 통보
 - (보건소) 의료기관에 격리해제 결정사항 전달
- 격리해제 기준
 - (의사환자) 코로나 19(COVID-19) 검사 음성일 경우
 - (확진환자)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4. 코로나 19(COVID-19) 유전자검사(PCR)

-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리보핵산(RNA)를 채취해 진짜 환자의 그것과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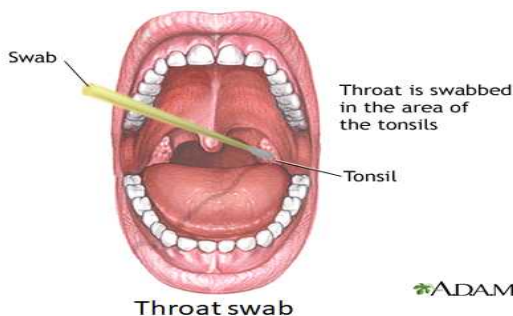
5. 검체 채취

- 코로나 19(COVID-19) 확인을 위한 검체의 종류로는 ▲가래, ▲면봉으로 목구멍 도찰하여 검체채취, ▲비강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양성판정 이후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사 시에는 혈액, 대변·소변을 채취 ...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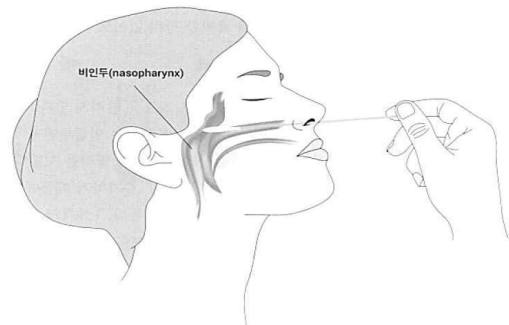


그림1. 가래 채취 방법

<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그림2. 상기도 채취 방법

6.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 파견돼 위기상황 파악 및 현장 지휘·통제·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질병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과 역학·감염내과·예방의학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

7. 선별진료소

- 응급실 밖이나 의료기관과 별도로 분리 설치된 진료시설로, 코로나19(COVID-19) 의심 환자가 찾는 첫 번째 장소로 의심환자의 사전 역학조사와 진찰이 이뤄지며 검체 채취가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음
 - 선별진료소 현황
 - 정부(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COVID-19) 사이트*에 매일 업데이트
- * 사이트 주소: <http://www.mohw.go.kr>
- 해당 사이트에서 검체 채취 가능 진료소도 조회 가능



8.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 평시(관심단계)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주의, 경계, 심각단계) 시, 신종 감염병(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감염병관리 시설
- 음압격리병실 및 필수지원시설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 병원 내 2차 감염을 억제하고 의료진의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전파방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

9. 음압병상

- 병실의 기압을 복도보다 낮게 설정하여 공기의 흐름이 복도에서 병실로 흐르도록 설치한 병실
- 병실내부는 지속적인 음압이 유지되며 화장실은 병실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고 샤워실이 설치되어야함

10. 방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일시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입원시키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물건을 폐기하는 것
(일반인이 사용·접수·이동·세척·버리는 것을 금지)
- 오염된 장소를 소독
- 오물을 정해진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11. 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하는 것
- 감염병환자·간호인·접촉자가 사용한 의류, 침구, 주방기구, 서적 등을 ▲소각,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 ▲석탄산 3% 수용액, 크레졸액 3% 수용액, 대한약전 규격 포르마린 등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소독대상 물건에 뿌리는 것, ▲의류·침구·용구·도서·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 다른 소독법으로 소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

12. 이소프로판올

- 알코올은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메탄올이 있는데,
- 소독용으로는 에탄올, 이소프로판올이 사용되며,
- 이소프로판올은 에탄올보다 독성이 강함

13. N95 마스크

- 보통 마스크와는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호흡기'에 속함
- 호흡기는 미국 국립보건원(CDC)의 하부기관인 국립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의 규제를 받으며, 차단의 수준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분류
-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는 N95 이상의 호흡기를 착용할 것을 권장
- '95'는 공기에 떠다니는 1.0 마이크로미터(μm) 이상 크기의 미세과립의 95% 이상을 걸러 준다는 뜻
- N은 'Not resistant to oil'의 약자로 기름 성분에 대해 저항성이 없는 것을 말함(기름 성분이 있는 곳에서는 R(Resistant to oil)이나 P(oil-Proof)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14. KF94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거친 마스크
- 평균 0.4 μm 크기의 미세먼지 입자를 94% 차단
- 황사, 미세먼지는 물론 전염성 질병까지 차단 가능
- 다만, 차단율이 높을 수록 숨쉬기 어려우므로 노약자 및 어린이는 호흡량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야 함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격리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격리 구분 ☐ 자가 ☐ 시설 ☐ 병원	격리 기간		
	격리 장소	격리 장소	
		주소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 또는 동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격리대상’임을 통지합니다.

※ 본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OOO 보건소장

(관인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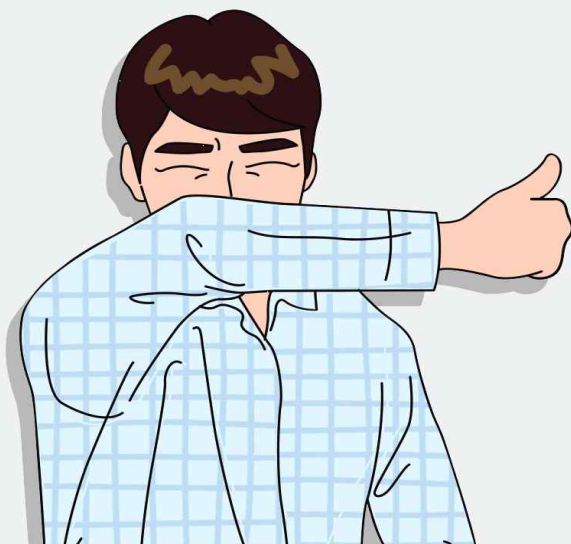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우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입소자) 중
코로나 19(COVID-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층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층으로 옮겨서 처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4.

○○ 장기요양기관 대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입소자) 중
코로나 19(COVID-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옥을 폐쇄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인 출입 통제

2020. 2. 4.

○○ 장기요양기관 대표

붙임 6 감염병 발생 신고서(입소시설)

서식 2

감염병발생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감염병 발생 신고서

※ 위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알록)

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 [] 보건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브루셀라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종후군(증상 및 징후:)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제2급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수두(水痘)	[] 홍역(紅瘧)	[] 폴리오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3급	[]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쓰쯔가무시증	[] 렐로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광수병(恐水病)	[] 신종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Q熱)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 유 [] 무	위태	[] 입원 []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함)	
환자의 소속기관명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종지 60g/㎡(재활용품)]

붙임 7 전국 보건소 현황

□ 상세 현황

2020. 1월말 기준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서울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7200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00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600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00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500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60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423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4501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600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5465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1439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20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1801
서울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114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011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1749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20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4340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3114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50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152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14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6317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710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부산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51-970-3415
	금정구	금정구보건소	051-519-5051
	기장군	기장군보건소	051-709-4791
	남구	남구보건소	051-607-6460
	동구	동구보건소	051-440-6500
	동래구	동래구보건소	051-555-4000
	부산진구	부산진구보건소	051-645-4000
	북구	북구보건소	051-309-4500
	사상구	사상구보건소	051-310-4791
	사하구	사하구보건소	051-220-5701
	서구	서구보건소	051-242-4000
	수영구	수영구보건소	051-752-4000
	연제구	연제구보건소	051-665-4871
	영도구	영도구보건소	051-419-4000
	중구	중구보건소	051-600-4741
	해운대구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01
대구	남구	남구보건소	053-664-3610
	달서구	달서구보건소	053-667-5616
	달성군	달성군 보건소	053-668-3333
	동구	동구보건소	053-662-3201
	북구	북구보건소	053-665-3208
	서구	서구보건소	053-663-3111
	수성구	수성구보건소	053-666-3111
	중구	중구보건소	053-661-3121
인천	강화군	강화군보건소	032-930-4013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인천	계양구	계양구보건소	032-430-7801
	남동구	남동구보건소	032-464-4001
	동구	동구보건소	032-762-4001
	미추홀구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310
	부평구	부평구보건소	032-509-8200
	서구	서구보건소	032-560-5000
	연수구	연수구보건소	032-749-8000
	옹진군	옹진군보건소	032-899-3110
	중구	중구보건소	032-760-6010
광주	광산구	광산구보건소	062-960-8733
	남구	남구보건소	062-607-4311
	동구	동구보건소	062-608-3261
	북구	북구보건소	062-410-8961
	서구	서구보건소	062-350-4108
대전	대덕구	대덕구보건소	042-608-5499
	동구	동구보건소	042-251-6112
	서구	서구보건소	042-288-4500
	유성구	유성구보건소	042-611-5011
	중구	중구보건소	042-580-2700
울산	남구	남구보건소	052-226-2805
	동구	동구보건소	052-209-4080
	북구	북구보건소	052-289-3450
	울주군	울주군보건소	052-204-2798
	중구	중구보건소	052-290-43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044-301-2000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경기	가평군	가평군보건소	031-582-2488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8075-4013
	고양시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083
	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60
	과천시	과천시보건소	02-2150-3800
	광명시	광명시보건소	02-2680-2862
	광주시	광주시보건소	031-760-2110
	구리시	구리시보건소	031-550-8681
	군포시	군포시보건소	031-461-5464
	김포시	김포시보건소	031-980-5011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031-590-2552
	남양주시	남양주풍양보건소	031-590-4771
	동두천시	동두천시보건소	031-860-3419
경기	부천시	부천시보건소	032-625-4183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031-729-3990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031-729-3870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031-729-3930
	수원시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16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031-228-8716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5802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031-228-7716
	시흥시	시흥시보건소	031-310-5811
	안산시	안산시 단원보건소	031-481-6341
	안산시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031-481-5909
	안성시	안성시보건소	031-678-5710
	안양시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8045-4472
	안양시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031-8045-3472
	양주시	양주시보건소	031-8082-7106
	양평군	양평군보건소	031-770-3505
	여주시	여주시보건소	031-887-3601
	오산시	오산시보건소	031-8036-6025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경기	용인시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031-324-6911
	용인시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031-324-8924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11
	의왕시	의왕시보건소	031-345-3541
	의정부시	의정부시보건소	031-870-6001
	이천시	이천시보건소	031-635-2400
	파주시	파주시보건소	031-940-4800
	평택시	평택시 송탄보건소	031-8024-6615
	평택시	평택시 평택보건소	031-8024-5553
	포천시	포천시보건소	031-538-3600
	하남시	하남시보건소	031-790-6555
	화성시	화성시보건소	031-369-2551
강원	강릉시	강릉시보건소	033-660-3010
	고성군	고성군보건소	033-681-4000
	동해시	동해시보건소	033-530-2401
	삼척시	삼척시보건소	033-572-4000
	속초시	속초시보건소	033-631-4000
	양구군	양구군보건소	033-481-2400
	양양군	양양군보건소	033-670-2550
강원	영월군	영월군보건소	033-370-2550
	원주시	원주시보건소	033-737-4011
	인제군	인제군보건소	033-461-2425
	정선군	정선군보건소	033-562-4000
	철원군	철원군보건소	033-450-5550
	춘천시	춘천시보건소	033-250-3550
	태백시	태백시보건소	033-552-4000
	홍천군	홍천군보건소	033-430-4000
	횡성군	횡성군보건소	033-340-5612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충북	괴산군	괴산군보건소	043-832-4000
	단양군	단양군보건소	043-420-3201
	보은군	보은군보건소	043-540-5600
	영동군	영동군보건소	043-740-5600
	옥천군	옥천군보건소	043-730-2114
	음성군	음성군보건소	043-872-2136
	제천시	제천시보건소	043-641-2720
	증평군	증평군보건소	043-835-4220
	진천군	진천군보건소	043-539-7771
	청주시	청주시 상당보건소	043-201-3116
충북	청주시	청주시 서원보건소	043-201-3217
	청주시	청주시 청원보건소	043-201-3421
	청주시	청주시 흥덕보건소	043-201-3300
	충주시	충주시보건소	043-850-3412
충남	계룡시	계룡시보건소	042-840-3567
	공주시	공주시보건소	041-840-8755
	금산군	금산군보건소	041-750-4311
	논산시	논산시보건소	041-746-8011
	당진시	당진시보건소	041-360-6005
	보령시	보령시보건소	041-930-0900
	부여군	부여군보건소	041-835-8600
	서산시	서산시보건소	041-667-6550
	서천군	서천군보건소	041-950-6700
	아산시	아산시보건소	041-537-3403
	예산군	예산군보건소	041-339-8993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041-521-2650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2552
	홍성군	홍성군보건소	041-632-2588
전북	고창군	고창군보건소	063-560-8714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전북	군산시	군산시보건소	063-462-4923
	김제시	김제시보건소	063-540-1300
	남원시	남원시보건소	063-625-4000
	부안군	부안군보건소	063-584-1261
	완주군	완주군보건소	063-290-3008
	익산시	익산시보건소	063-859-4802
	전주시	전주시 보건소	063-281-6200
	정읍시	정읍시보건소	063-539-6072
	진안군	진안군보건소	063-430-8560
전남	강진군	강진군보건소	061-430-3533
	고흥군	고흥군보건소	061-830-5561
	광양시	광양시보건소	061-797-4004
	나주시	나주시보건소	061-339-2171
	담양군	담양군보건소	061-383-4000
	목포시	목포시보건소	061-277-4000
	무안군	무안군보건소	061-450-5014
	보성군	보성군보건소	061-853-4000
	순천시	순천시보건소	061-749-6905
	신안군	신안군보건소	061-243-8550
	여수시	여수시보건소	061-683-4000
전남	영광군	영광군보건소	061-350-5552
	영암군	영암군보건소	061-470-6525
	장성군	장성군보건소	061-390-7550
	장흥군	장흥군보건소	061-860-0550
	진도군	진도군보건소	061-540-6005
	함평군	함평군보건소	061-320-2405
	해남군	해남군보건소	061-531-3738
	화순군	화순군보건소	061-379-5305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경북	경산시	경산시보건소	053-810-6363
	경주시	경주시보건소	054-779-8573
	고령군	고령군보건소	054-954-1300
	구미시	구미시 구미보건소	054-480-4000
	구미시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0-4151
	군위군	군위군보건소	054-380-7401
	김천시	김천시보건소	054-433-4000
	문경시	문경시보건소	054-555-2033
	봉화군	봉화군보건소	054-673-4000
	상주시	상주시보건소	054-535-4000
	성주군	성주군보건소	054-933-2400
	안동시	안동시보건소	054-855-5986
	영덕군	영덕군보건소	054-730-6823
경북	영양군	영양군보건소	054-680-5114
	영주시	영주시보건소	054-631-4000
	영천시	영천시보건소	054-330-7860
	예천군	예천군보건소	054-650-8011
	울진군	울진군보건소	054-789-5000
	의성군	의성군보건소	054-830-6660
	청도군	청도군보건소	054-370-6470
	칠곡군	칠곡군보건소	054-973-4000
	포항시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70-4004
	포항시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70-4114

시도	시군구	보건기관명	대표전화번호
경남	거제시	거제시보건소	055-639-6200
	거창군	거창군보건소	055-940-8310
	고성군	고성군보건소	055-670-4001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055-330-4451
	남해군	남해군보건소	055-860-8701
	밀양시	밀양시보건소	055-359-7020
	사천시	사천시보건소	055-831-3560
	양산시	양산시보건소	055-380-4000
	의령군	의령군보건소	055-570-4010
	진주시	진주시보건소	055-741-4000
경남	창녕군	창녕군보건소	055-530-6202
	창원시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45-4000
	창원시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01
	창원시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4000
	통영시	통영시보건소	055-650-6010
	하동군	하동군보건소	055-882-4000
	함안군	함안군보건소	055-580-3101
	함양군	함양군보건소	055-960-5331
	합천군	합천군보건소	055-930-3681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11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01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51
	제주시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180
	제주시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11
	제주시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100